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김진표

이원욱 • 윤관석 • 김경협

인재근 · 최종윤 · 박상혁

최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와 시·군·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2호).

- 나. 특례시의 설치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 다. 특례시의회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거하도록 함(안 제 48조제1항).
- 라. 특례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0조제1항제3호 신설).
- 마.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게 함(안 제175조).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과"를 "특례시·시·군과"로 한다.

2. 특례시, 시, 군, 구

제3조제2항 중 "시는"을 "특례시와 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시에는"을 "시와 특례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2항에"를 "제7조제3항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시·읍"을 "특례시·시·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읍"을 "특례시·시·읍"으로 한다.

① 특례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0만 이상이되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라목·마목 및 바목 중 "시·군"을 각각 "특례

시·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인구 50만"을 "특례시와 인구 50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 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5조에"를 "특례시 및 제175조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5조에"를 "특례시와 제175조에"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을 "특례시·시·군 및 자치구에서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28조 중 "시장·군수"를 "특례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시·도의"를 "시·도 및 특례시의"로 한다.

제90조제2항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93조 중 "시에 시장"을 "특례시에 특례시장, 시에 시장"으로 한다.

제97조 본문 중 "시장·군수"를 "특례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100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02조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시장·군수"를 "특례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에"를 "특례시와 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례시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례시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도지사의"를 "시·도지사 및 특례시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의 부시장"을 "특례시와 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시·도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도 및 특례시의"로하다.

3. 특례시의 부시장의 정수 : 2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4항 중 "시·도에서는"을 "시·도 및 특례시에서는"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시장이"를 "특례시장 및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특례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119조 중 "시장의"를 "특례시장이나 시장의"로 한다.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 본문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 군"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후단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52조제1항 후단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제3호 중 "시장"을 "특례시장·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 4호 중 "시"를 "특례시·시"로 한다.

제16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군"을 각각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전단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72조제1항 중 "시·군"을 "특례시·시·군"으로 한다.

제175조 중 "인구 50만"을 "특례시와 인구 50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	
지 종류로 구분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시, 군, 구</u>	2. <u>특례시, 시, 군, 구</u>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2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	
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시·군과</u> 다르게 할 수 있	<u>특례시·시·군과</u>
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 략)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2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u>시는</u> 도의 관할 구역 안	<u>특례시와 시는</u>
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	
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	
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 ③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 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 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 면·동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 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 계)①(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

③ <u>광역시·특별자치시</u>
<u>시와 특례시에는</u>
④ <u>제7조제3항에</u>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 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
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례시·시·군

단체를 지정한다. 제7조(<u>시·읍</u>의 설치기준 등) <u><신 설></u>

-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 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1. <u>제1항에</u>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2. ~ 4. (생 략)
- ③ (생 략)
- ④ <u>시·읍</u>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 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 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 상의 <u>시·군</u>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제7조(<u>특례시·시·읍</u>
) ① 특례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10
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u>③</u>
<u>.</u>
1. <u>제2항에</u>
2. ~ 4. (현행과 같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특례시·시·읍
사무배분기준) ①
が下明七月七月①
,
1
가
<u>특례시·시·군</u>

- 나. · 다. (생략)
- 라. 국가와 <u>시·군</u>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 무
- 마. <u>시·</u>군 및 자치구가 독자 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 한 사무
- 바. 2개 이상의 <u>시·</u>군 및 자 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 한 사무. 다만, <u>인구 50만</u> 이상 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 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 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도와 <u>시·</u>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 무가 서로 경합하면 <u>시·</u>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u>특례시·시·군</u>
마. <u>특례시·시·군</u>
바 <u>특례시·시·</u> <u>군</u>
2. <u>특례시·시·군</u>
<u>특례시와 인구 50</u> <u>만</u>
 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례시·시·군</u>
<u>특례시·시·군</u> -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	
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	
이라 한다)은 시·도와 <u>제175조</u>	특례시 및
<u>에</u>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	제175조에
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	
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	
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u>.</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은 시·도는 500명, <u>제175조에</u>	특례시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와 제175조에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 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 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 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 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 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

- 1. ~ 4. (생 략)
- ② ~ ⑨ (생 략)
-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저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 지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

특례시·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세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u>특례시·시·군</u>
,
데28조(보고)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u>시장·</u> <u>군수</u>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 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 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 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 에서, <u>시·군</u> 및 자치구에서는 9 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 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 각 해당 시·도의회와 <u>시·군</u>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u>특례시</u>
<u> 장·시장·군수</u>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
권) ①
<u>특례시·시·군</u>
② (현행과 같음)
③
<u></u> 특례시·시·군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 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u>시·도의</u> 경우 의장 1명과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한다.

② • ③ (생 략)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생략)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 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 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 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생 략)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 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 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	
7]) ①	-
<u>시·도 및 특례시의</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현	
행과 같음)	•
② <u>특례시·시·군</u>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 (기 6 시 시 단세	_
	-
	-

를 두고, <u>시에 시장</u>,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 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 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 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 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 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 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 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 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

<u>특례시에 특례시장, 시에</u>
시장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례
<u>시장·시장·군수</u>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
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시·</u>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 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 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 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u>시·군</u>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를 거쳐야 한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 와 <u>시·군</u> 및 자치구에서 시행 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u>시</u> <u>장·군수</u>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 7 구청장) ① 특별시·광역시 및

<u>특례시·시·</u>	-
<u> </u>	
②	
<u>특</u> 례시·시·군	-
<u>.</u>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u>특례시·시·군</u>	
<u></u> 특례	-
<u>시장·시장·군수</u>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 구청장) ①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u>시에</u>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각 호와 같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 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 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 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 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 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u>특례시와 시에</u> -
1.・2. (현행과 같음)
3. 특례시의 부시장의 정수 : 2
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4.</u>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u>
및 특례시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 및 특례시의
<u>.</u>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 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 시장·부지사는 <u>시·도지사의</u> 제 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 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 차를 마쳐야 한다.

④ (생략)

-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 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 저 한대행 등)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

③
<u>시·도지사 및 특례시</u>
<u>장의</u>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례시와 시의 부시장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u>에 따라 시·도 및 특례시의</u>
<u>.</u>
∥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
한대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이상인 <u>시·도에서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생략)

-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 방공무원으로 보하되, <u>시장·군</u> 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한다.
-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 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시·도 및 특례시에서는
⑤ (현행과 같음)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
명) ①
E 70 1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u>특례시장 및 시장이</u>
특례시장·시
<u>장·군수</u>
<u>.</u>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
무권한)
특례시장이나 시장의-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 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 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u>시·군</u> 및 자치구의회에 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 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④ (생 략)
-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저 (생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4조(결산)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

<u>특례시·시·군</u>				
 ②				
<u>특례시·시·군</u>				
 ③·④ (현행과 같음)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2				
<u>특례시·시·군</u>				
•				
제134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2				

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u>시·군</u>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 저 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①(생략)
 -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 1. (생략)
 - 2. 시·도를 달리하는 <u>시·군</u>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3. 시·도와 <u>시·군</u>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4. (생략)
 - 5. 시·도를 달리하는 <u>시·군</u> 및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6. (생략)
 - ③ ~ ⑦ (생 략)
-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 저 지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 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 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u>시·군</u> 및 자치구 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③ (생 략)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

	<u>특례시·시·군</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	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
	<u>특례시·시·군</u>
	②・③ (현행과 같음)
제	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수있다.

② (생략)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생략)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

<u>특례시·시·군</u>					
<u>특례시·시·군</u>					
 ② (현행과 같음)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					
립) ①					
<u>특례시·시·군</u> -					
<u>특례시·시·군</u> -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					

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 부장관의, <u>시·군</u>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 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 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 의 구성원인 <u>시·군</u> 및 자치구 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 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생략)

-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수 있다.
 - 1. 2. (생략)
 -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4. <u>시</u>·군·자치구의회의 의장
 - ② ~ ⑦ (생 략)
-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 저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

도·감독) ①				
특례시·시·군				
· <u>특례시·시·군</u>				
· ② (현행과 같음)				
세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				
1.・2. (현행과 같음)				
3. <u>특례시장·시장</u>				
4. <u>특례시·시</u>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				

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u>시·군</u>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u>시·군</u>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 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 도·감독을 받는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생략)

<u>특례시·시·군</u>
 특례시·시·군
· ② (현행과 같음)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 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u>시·</u>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제170소(지방자지단제의 상에 대				
한 직무이행명령) ①				
<u>특례시·시·군</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u>특례</u>				
<u>시·시·군</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 치시를 제외한 <u>인구 50만</u>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 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u>특례시와</u>	인구 50만-